

## 「2022년도 평창군기금운용변경계획안」

# 검 토 보 고 서

본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2022년 12월 1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여 12월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9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임.

### I. 제안이유

2022년도 평창군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수립하고 평창군의회 심의 의결을 받으려 하는 것임.

### II. 주요내용

#### 가. 통합재정안정화 기금(통합계정)

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일반회계 예탁금이자 수입 증가분 반영을 위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.

#### 나. 통합재정안정화기금(재정안정화계정)

재정 불균형 조성, 지방채 상환 등 긴급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재정안정화계정 기금조성액 반영을 위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.

#### 다. 옥외광고발전기금

2022년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활용 지자체 지원사업을 위해 배분된 예산을 정치현수막 우선계시대 확충 사업비로 편성하기 위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.

라. 기금운용변경 내역은 다음과 같음.

[단위:천원]

기 금 명	계획액	기정계획액	비교증감
합 계(7건)	20,509,910	9,462,728	11,047,182
통합재정안정화기금 (통합계정)	1,002,041	979,541	22,500
통합재정안정화기금 (재정안정화계정)	11,000,000	0	11,000,000
체육진흥기금	2,211,088	2,211,088	0
자활기금	250,562	250,562	0
재난관리기금	1,681,360	1,681,360	0
옥외광고발전기금	164,225	139,543	24,682
식품진흥기금	169,837	169,837	0
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	4,030,797	4,030,797	0

### Ⅲ. 기금변경 개요

#### □ 기금조성규모

- 「지방자치법」 및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」 과 개별법에 따라  
설치 및 관리·운용하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7개 기금으로  
2022년도말 기금조성계획액은 24,291백만원 임.

[단위:천원]

기 금 명	계획액	기정계획액	비교증감
합 계(7건)	24,291,199	13,268,699	11,022,500
통합재정안정화기금 (통합계정)	4,630,402	4,607,902	22,500
통합재정안정화기금 (재정안정화계정)	11,000,000	0	11,000,000
체육진흥기금	2,644,088	2,644,088	0
자활기금	220,562	220,562	0
재난관리기금	1,070,392	1,070,392	0
옥외광고발전기금	139,543	139,543	0
식품진흥기금	139,415	139,415	0
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	4,446,797	4,446,797	0

#### IV. 검토결과

##### 가. 기금운용 변경계획(총괄)

○ 수입·지출계획은 20,510백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1,047만원 증가

■ 수입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(통합계정)에서 재정융자금이자수입

22백만원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(재정안정화계정)에서 일반회계전입금

11,000백만원 순증, 옥외광고발전기금에서는

한국지방재정공제회(옥외광고센터) 기금 25백만원 순증

■ 지출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(통합계정)에서 예치금 22백만원 증액 및

통합재정안정화기금(재정안정화계정)은 예치금 11,000백만원 신규

편성하였으며, 옥외광고발전기금에서 비융자성사업비(정치현수막

우선계시대 확충사업)25백만원 신규편성하였음.

<기금운용 변경내역>

[단위:천원]

구 분	계 획 액		기 정 계 획 액		증 감	
	구 성 비	구 성 비	구 성 비	구 성 비	증 감 륜	증 감 륜
총 계	20,509,910	100.00%	9,462,728	100.00%	11,047,182	53.86%
통합재정안정화기금 (통합계정)	1,002,041	4.89%	979,541	10.35%	22,500	2.25%
통합재정안정화기금 (재정안정화계정)	11,000,000	53.63%	0	0.00%	11,000,000	100.00%
체육진흥기금	2,211,088	10.78%	2,211,088	23.73%	0	0.00%
자활기금	250,562	1.22%	250,562	2.65%	0	0.00%
재난관리기금	1,681,360	8.20%	1,681,360	17.77%	0	0.00%
옥외광고발전기금	164,225	0.80%	139,543	1.47%	24,682	15.03%
식품진흥기금	169,837	0.83%	169,837	1.79%	0	0.00%
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	4,030,797	19.65%	4,030,797	42.60%	0	0.00%

나. 기금별 변경내역

□ 평창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(통합계정)운용계획 변경(기획실)

- 수입·지출계획은 1,002백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2백만원 증가
  - ▶ 수입은 재정융자금 이자수입 22백만원 증가
  - ▶ 지출은 예치금 22백만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음.

<평창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(통합계정)자금운용계획>

[단위:천원]

수 입 계 획				지 출 계 획			
항 목	수입액	기정액	증 감	항 목	지출액	기정액	증 감
합 계	1,002,041	979,541	22,500	합 계	1,002,041	979,541	22,500
전 입 금		0		비용자성 사 업 비	0	0	0
예 탁 금 원금회수	802,485	802,485	0	기본경비	0	0	0
예 치 금 회 수	142,516	142,516	0	예치금	130,402	107,902	22,500
이자수입	57,040	34,540	22,500	예수금 원리금 상환	871,639	871,639	0

□ 평창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(재정안정화계정)운용계획 변경(기획실)

- 수입·지출계획은 11,000백만원으로 순증
  - ▶ 수입은 전입금 11,000백만원 순증
  - ▶ 지출은 예치금 11,000백만원 신규 편성하였음.

<평창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(재정안정화계정)자금운용계획>

[단위:천원]

수입 계획				지출 계획			
항 목	수입액	기정액	증 감	항 목	지출액	기정액	증 감
합 계	11,000,000	0	11,000,000	합 계	11,000,000	0	11,000,000
전 입 금	11,000,000	0	11,000,000	비용자성 사업비	0	0	0
예탁금회수	0	0	0	기본경비	0	0	0
예치금회수	0	0	0	예치금	11,000,000	0	11,000,000
이자수입	0	0	0	예수금 원리금 상환	0	0	0

□ 평창군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(도시과)

- 수입·지출계획은 164백만원으로 기정대비 25백만원 증가
  - ▶ 수입은 보조금 25백만원 순증
  - ▶ 지출은 비용자성사업비 25백만원 신규 편성하였음.

<옥외광고발전기금 자금운용계획>

[단위:천원]

수입 계획				지출 계획			
항 목	수입액	기정액	증 감	항 목	지출액	기정액	증 감
합 계	164,225	139,543	24,682	합 계	164,225	139,543	24,682
보 조 금	24,682	0	24,682	비용자성 사업비	24,682	0	24,682
예탁금회수	0	0	0	기본경비	0	0	0
예치금회수	121,458	121,458	0	예탁금	0	0	0
이자수입	961	961	0	예치금	139,543	139,543	0
기타수입	17,124	17,124	0	기타지출	0	0	0

## 다. 검토의견

-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기금운용계획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%를 초과하는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.
- 금회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은 기정계획대비  
평창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(통합계정)의 예치금 증액(20.85%)  
평창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(재정안정화계정)의 예치금 순증(100%)  
평창군옥외광고발전기금의 비융자성사업비 순증(100%)
- 2022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「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」을 준수하여 작성된 것으로 검토됩니다.

## 【관계법령】

### □ 지방자치법 제159조 (재산과 기금의 설치)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, 기금의 설치·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### 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.
  1.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
  2.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
  3.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 1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
  2. 「재해구호법」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
-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 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.